

○ ○ 보호관찰소

※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수신 법무부장관

발신 ○ ○ 보호관찰소장 직인

제 목 특정범죄자 []치료기관 []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서

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아래 신청인의 특정범죄자 []치료기관, []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기관명 (법인명)	신청인의 성명 (대표자)
변경신청 내용	
제시 의견	[]변경신청 적정, []변경신청 부적정

항목별 검토 내용

- 기관의 장 변경의 적정성: []적정 []부적정 []해당 없음
- 평가 사유:
- 기관의 명칭 변경의 적정성: []적정 []부적정 []해당 없음
- 평가 사유:
- 기관의 소재지 변경의 적정성: []적정 []부적정 []해당 없음
- 평가 사유:
- 대상 특정 범죄 변경의 적정성: []적정 []부적정 []해당 없음
- 특정 범죄자 치료 실적: []우수 []보통 []미흡 []해당 없음
- 특정범죄자 교정프로그램 개발·실시 경험: [] 우수 [] 보통 [] 미흡 [] 해당 없음
- 평가 사유:
- 치료·교정프로그램 담당자 변경의 적정성: []적정 []부적정 []해당 없음
- 치료·교정프로그램 담당자의 자격: []우수 []보통 []미흡 []해당 없음
- 평가 사유:
- 연간 치료·상담치료 가능 인원 변경의 적정성: []적정 []부적정 []해당 없음
- 기타 의견: